

-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는 “지방자치단체가 건강 친화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에 맨발 걷기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규정(안 제1조)
-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2조)
- 군수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군수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조, 제2조
 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, 제2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필요
- 기 타
 - 가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- 나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4. 1. 4 ~ 2024. 1. 11.)
 - 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[붙임2]
 - 라. 성별영향평가 : 【붙임 3】
 - 개선사항 없음(2023. 11. 10. 가족지원과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 자연공원, 도시공원, 탐방로, 산책로, 등산로, 숲체험코스 등 기존시설을 정비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길에 이용자가 맨발로 보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음.
- 이상과 같이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
- 관계 법령에 위배 되지 않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자치법규의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함.